

광주부설초 전입학 규정

본 규정은 2024년 2월 20일(화)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정임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입생 모집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) 전입학 규정이란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입자를 충원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.

제3조(관련 근거)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-6404(2010.11.09.)호,

교육부 학교정책과-6767(2014.11.06.)호

[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학칙 및 규정 제7장](#)

제4조(결원 충원)

제1항(신입생 충원)

- 신입생은 지원자 중 당첨자(정원 수)와 대기자(남여 각 10명)를 추천한다.
 - 신입생 당첨자 중 입학식 전후 면접 및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 신입생 접수 대장에 '포기자'를 기록하고 포기서와 함께 관리한다.
 - 신입생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.
 - 입학식 이전 결원 : 신입생 대기자(남여 각 10명)로 충원
 - 입학식 이후 결원 : 광주광역시 거주 일반학생
 - [- 충원 시에는 남녀 재적수를 고려하되, 학년 정원수 96명을 상한선으로 한다.](#)
- * 2017학년도부터 입학 희망 쌍생아는 '학교정책과-6767(2014.11.06.)호'의 지침에 따라 쌍생아 중 1인만 추천에 참여하고 당첨 시 추천자 1인외 나머지 쌍생아는 한시적 정원외 입학을 허가한다.

제2항(재학생(2~6학년) 충원)

- 재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충원한다.
 - 광주광역시 거주 일반학생
 - [- 충원 시에는 남녀 재적수를 고려하되, 학년 정원수 96명을 상한선으로 한다.](#)

제3항(전입생 충원 시기) 전입생 모집은 3월, 9월에 공고하여 충원한다.

제5조(대상자 공개)

제1항(결원 공개)

-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학년과 성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제2항(추첨결과 공개)

-추첨을 통하여 충원 대상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제6조(시행)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의 시행 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이 규정의 시행은 2017년 3월 1일부터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의 유예기간은 2018년 4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.
2.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